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7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민병덕·신영대·임미애

이기헌・남인순・김 윤

김남희 · 김한규 · 김병기

황명선 · 장철민 · 이해민

김재원 • 한창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일정한 소음기준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 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 기준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제79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 이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 혅 행 개 정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法 사용제한) ① -----의 規定에 의한 공개장소에서 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 討論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후보 <단서 신설> 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 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제79 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 음기준 이내에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 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사용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u>다.</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